

# 2020년 시간급

## 최저임금

# 8,590 원

월환산액 1,795,310원 :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,

월환산액 산정 기준 시간수 약 209시간  
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
### 최저임금은

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 
정하고 사용자에게  
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 
지급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.

2020. 1. 1. ~ 2020. 12. 31. 적용

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

### 최저임금

반드시 확인!!!



### 01.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?

- »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»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·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청소년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 등)는 모두 적용됩니다. 다만,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# 02.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?

- »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(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)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※ 다만,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(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<단순노무종사자>에 해당하는 사람)는 수습여부·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%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
### 03.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?

- »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
- » 다만,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

- ✓ 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는 임금
- ✓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
- ✓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·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,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
- 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20%(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) 이내
- ②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5%(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) 이내
- ⇒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
- ⇒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(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)
- ※ '최저임금 월 환산액'이란?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
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,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
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= 약 209시간  
{(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 X 365 ÷ 7} ÷ 12월 = 약 209시간  
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 8,59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(209시간) = 1,795,310원

**취업규칙**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 
**변경 절차**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 
**특 례** 근로자의 과반수 (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)의 의견청취 필요

#### 04.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?

☑ **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**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**무효**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#### 05.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?

☑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“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”을 제외하고, 일·주·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
 ※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(유급주휴시간 포함) :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209시간

$$\boxed{\text{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}} = \boxed{\text{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}} - \boxed{\text{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}}$$

#### 06.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☑ 사용자는 ‘**① 최저임금액, 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, ③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,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**’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  
 ※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#### 07.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☑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**에 처해지거나,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



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0년 4월 월급 1,980,000원을 받는 경우

##### 월급명세서

기본급	1,500,000원
직무수당	150,000원
식대	50,000원
교통비	50,000원
시간외수당	105,000원
상여금	125,000원
<b>급여계</b>	<b>1,980,000원</b>

※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% (1,500,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)

#####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

기본급	1,500,000원
직무수당	150,000원
상여금	0원*
식대·교통비	10,230원**
<b>계</b>	<b>1,660,230원</b>

\*상여금 125,000원중 2020년 월환산액 1,795,310원의 20% 초과금액

\*\*식대·교통비 100,000원중 2020년 월환산액 1,795,310원의 5% 초과금액

#####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

$1,660,230\text{원} \div \text{약}209\text{시간}$   
 $\approx 7,943\text{원} < 8,590\text{원}$   
 ∴ 최저임금 위반

